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697
----------	-----

2024. 10. 18.(금)  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  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  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  
라. 상정일자 : 제421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4년 10월 11일 상정의결)  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반주현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수산파크 인지도 향상 및 전시·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,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및 위원회 등 명칭변경(안 제1조~제8조, 제10조, 제13조·제14조, 제5장, 제18조~제20조, 제25조·제26조)  
- “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변경
-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제19조)  
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9년 12월 31일까지”로 조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- (필요성)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·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,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로 효율적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  - (타당성)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명칭 변경 및 존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  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  - (종합의견)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명칭 변경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 형성으로 인지도 상승이 기대되며,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충북수산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
-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충북수산파크가 생산·가공, 유통·소비, 체험·관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및 홍보가 필요함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유재목 위원

- ‘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’를 ‘충북수산파크’로 명칭 변경하는 상세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

○ 반주현 농정국장

- 기존 수산식품거점단지에 충북아쿠아리움 등 전시·문화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두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명칭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

○ 이종갑 위원

- 충북아쿠아리움 관람객 방문 현황 및 유료 전환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

○ 반주현 농정국장

- 충북아쿠아리움 누적 방문객 수는 22만명이며, 현재도 주말에 5~6천명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음. 올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 수 30만명을 목표로 홍보 강화 예정임. 유료 전환 계획은 현재까진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697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697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북수산파크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·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,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및 위원회 등 명칭변경(안 제1조~제8조, 제10조, 제13조·제14조, 제5장, 제18조~제20조, 제25조·제26조)
  -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변경
-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19조)
  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9년 12월 31일까지”로 조정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(제외사유서 붙임)

##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”를 “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(이하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”를 “충북수산파크(이하 “수산파크”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 입주업체”를 “수산파크 입주업체”로, “수산식품 거점단지 내”를 “수산파크 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6조 전단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”를 “충북수산파크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,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3호다목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북수산파크 운영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위원회의 위원은 제 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북수산파크

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</u> <u>운영 및 관리 조례</u></p>	<p><u>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<u>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</u>는 수산식품 등의 생산·가공·판매·연구개발·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사용자”란 <u>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(이하 “수산식품거점단지”라 한다)</u> 시설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치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수산식품거점단지</u>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<u>수산식품거점단지</u>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</p>	<p>제1조(목적) <u>충북수산파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충북수산파크(이하 “수산파크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치 등) ① ----- ----- <u>수산파크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수산파크</u>----- -----</p>



④ 수산식품 거점단지 입주업체 운영에 있어 임대를 원칙으로 하 되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부지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 이 분양할 수 있다.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」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 용지에 한정하 다.

2. 분양을 통한 시설에서는 수산 식품 거점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식품을 주로 생산하여 야 한다.

3.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 받 은 자는 분양 부지 및 분양 부지에 건립된 시설을 매매할 경우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야 하고, 이 분양 부지 또는 시설 을 매수한 자는 당초 매도자의 운 영조건인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리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시설을 운영 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·수익 허가)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·수익하

④ 수산파크 입주업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수산파크 내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.

2. ----- 수산파크  
-----  
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사용·수익 허가) 수산파크-----  
-----

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사용·수익 허가의 방법) ①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·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,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8조(사용·수익 허가기간) ①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용·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청문)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료 부과)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물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,000

-----  
---. -----  
-----.

제7조(사용·수익 허가의 방법) ①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  
---.

② -----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·수익 허가기간) ①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청문) -----  
-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사용료 부과) 수산파크 ----  
-----  
-----

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단, 사용자의 운영 상황 및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료 감면) 도지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제5장 충청북도

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

제18조(운영위원회) 도지사는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9조(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축수산과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
----- 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4조(사용료 감면) -----  
----- 수산파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제5장 충북수산파크 운영위원회

제18조(운영위원회) ----- 수산파크 -----  
----- 충북수산파크 -----  
----- .

제19조(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 
또는 위촉하는 사람

가.·나. (생략)

다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  
거점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 경  
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  
하는 사람

③ ~ ⑤ (생략)

⑥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5년 12  
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  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·관리  
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3. 수산식품 거점단지 분야에 관  
한 사항

4. 수산식품 거점단지 편의시설  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
제25조(양식수산물의 분양) ① 도지  
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 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  
장이 매년 실시하는 수산식품 거  
점단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  
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  
소재한 양어장, 수산물유통시설,

-----  
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 수산파크 --

-----  
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2029년 12월  
31일-----.

제20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
-----.

1. 수산파크 -----
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수산파크 -----

---

4. 수산파크 -----

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양식수산물의 분양) 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 수산파크 -----

-----

-----

-----

그 밖의 수산식품 관련 기관·법  
인·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 
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  
사 개최)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  
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
행사를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에서  
개최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  
사 개최) ① -----  
-----  
----- 수산파크 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4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### □ 산업단지 관리지침

제20조(산업단지 브랜드 명칭)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색과 미래상이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(이하 이 조에서 "브랜드 명칭"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과 상호 조화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

### ○ 사 유

-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식품 거점단지 명칭 변경과 운영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# ○ 작성자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